

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11. 13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 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중 전상공상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,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유지 및 명예를 높여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조항을 간명화함(안 제1조)

-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
→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유공자(이하 “참전유공자”라 한다)
→ 유공자

나.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(안 제3조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→ 삭제함

다.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함(안 제4조제1호)

- 월 1만원 → 월 3만원 내

라.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함(안 제4조제1호)

- 의거, ~의 규정에 의한 → 따라, 에 따른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
-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(366백만원)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8. 9. 25.~ 10. 14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, “유공자(이하 “참전유공자”라 한다)”를 “유공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(이하 “참전유공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. 다만,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월 1만원”을 “월 3만원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거창군내 관광지”를 “군 관광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·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<u>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률</u>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 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<u>유공자</u>(이하 “<u>참전유공자</u>”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유공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“<u>참전유공자</u>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. 다만, 6.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<u>유공자</u>(이하 “<u>참전유공자</u>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지원대상자) <u>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. 단,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<u>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</u></p> <p>2. 「<u>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</p>	<p>제3조(지원대상자) <u>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. 다만,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.</u>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<u>월 1만원</u> 지급 2. (생략) 3. <u>거창군내 관광지</u>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4. (생략) 	<p>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월 3만원 내</u> 지급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군 관광지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
<p>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거</u>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수당은 매분기 익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.</p> <p>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<u>의거</u>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다만,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에 대하여는 첨부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신청받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